

# 요금 폭탄에 인프라 부족...거꾸로 가는 전기차

### 전기료 20% 인상 속 기본료 면제 50%로 줄여 요금 3배나 올라 특례할인도 단계적 축소...소비자들 “전기차 살 이유 없다” 불만 광주·전남 전기차 7755대, 충전소는 3075곳으로 전국 하위권

친환경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전기자동차가 충전요금이 대거 오르는 바람에 '애물단지'로 전락할 위기다. 특히 전기차에 적용됐던 충전요금 특례할인도 단계적으로 축소될 것으로 소비자들의 전기차 구매의욕도 사그라질 것이라는 관측마저 나오고 있다. 더불어 광주지역의 전기 충전소 설치 대수는 전국 하위권에 머물러 광주시의 관심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6일 광주시와 전남도 등에 따르면 전기차 충전소 공용시설 급속(50kW급 이상) 충전요금은 기존보다 약 1.5배, 완속(7kW) 충전요금은 3배 가량 각각 인상됐다. 한국전력공사가 7월부터 전기차 급속 충전요금을 현재 kWh당 173.8원에서 255.7원으로 인상하고 지금까지 100% 면제한 전기차 충전기의 대당 기본요금을 7월부터 50% 면제로 조정할 것이다.

광주시도 현재 시가 직접 운영하는 59대의 충전소에서는 kWh당 173.8원의 요금을 책정하고 있지만, 조만간 조제가 변경되면 현재의 요금에 따라가게 된다. 더 큰 문제는 민간 사업자가 대부분을 운영하고 있는 국내 공용시설의 완속충전

기이다. 기존 민간업체들은 기본요금 부과로 기존 완속 충전요금인 kWh당 60~100원 수준을 유지하던 월마다 수억원의 손실금이 발생한다는 이유로 kWh당 충전요금을 200원 초반으로 3배 이상 올릴 수밖에 없었다. 결국 전기요금은 20% 가량 올랐지만 소비자는 3배 가까운 요금 인상 폭탄을 맞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번 충전요금 인상으로 국내에서 가장 많이 팔린 현대차 '코나 일렉트릭'의 경우 400km를 달리는데 급속의 경우 1만6000원, 완속은 1만2000~1만4000원을 각각 부담하게 된다.

코나 가솔린 차량의 경우 400km를 달리는데 약 4만3000원의 주유비가 드는데 비해 아예 저렴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전기차 충전요금 인상은 아예 끝은 아니다.

'전기차 충전요금 특례할인'이 단계적으로 축소되는 것도 문제다. 내년 7월부터 전기차 충전요금이 기본요금의 75%를 내야해 kWh당 350원대가 되고, 2022년 7월부터는 100%를 받아 520원대까지 오르게 된다.

이 때문에 소비자들은 전기차를 사야 할 이유가 없어졌다며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수요 많아졌는데도 인프라는 제자리=광주·전남에 올해 1분기 기준 등록된 전기차 7755대(광주 3039대, 전남 4716대)답한다.

한국환경공단 자료에 따르면 광주·전남에 전기차 충전소는 광주 1439곳, 전남 1636곳으로 총 3075곳이다.

전국 17개 광역자치기구 중 광주는 12위, 전남은 10위 수준으로 여전히 하위권에 그치고 있어 광주·전남 전기차 보급 대수를 고려하면 충전시설은 여전히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여전히 전국 하위권인 민간사업체의 충전소 확대도 풀어야 할 숙제다. 개인이 아파트 등 공동주택 주차장에 전기차 충전

소를 설치하려면 입주자대표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지만 주차공간을 전기차가 차지한다는 이유 때문에 입주민 반대에 부딪혀 아파트 주차장에 전기차 충전소를 설치하지 못하는 공동주택이 여전히 많기 때문이다.

고가의 전기차를 구매하는데에 일률적인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고가의 외제차에 보조금을 주는 것은 국민 정서에도 반할 뿐 아니라 예산 낭비라는 것이다.

실제로 올해 5차(7월)로 광주시가 지급한 전기차 보조금을 살펴보면 총 11억 6030만원(84대) 중 67%인 7억 8486만원이 테슬라차량(57대)의 보조금으로 교부됐다.

광주에서 전기차를 운행하고 있는 정모씨는 "광주시에 친환경차 선도시세에 걸맞는 정책을 마련,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성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 광주·전남 장맛비 내일까지 50~150mm

28일까지 광주·전남 지역에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인다.

광주지방기상청은 "복합하는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27일 오전 남서해안부터 시작된 장맛비가 광주·전남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번 비는 28일 오후 그칠 것으로 보이며 예상강수량은 50~150mm, 일부지역에는 시간당 30~50mm의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기상청은 내다봤다.

27일 아침 최저기온은 21~22도, 낮 최고기온은 24~27도 분포를 보일 전망이다.

기상청 관계자는 "29일까지 흐리고 비가 오겠으며, 30일부터는 흐린 가운데 내륙을 중심으로 낮 기온이 31~33도의 분포로 덥겠다"고 예측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 학생회서 5만원 명절선물 받은 전남대 교수들 징계 부당 판결

학생회로부터 5만원 상당의 명절 선물을 받은 대학교수들의 징계는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행정2부(부장판사 이기리)는 A씨 등 전남대 교수 4명이 전남대 총장을 상대로 낸 견책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26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017년 9월 추석을 앞두고 학생회로부터 5만원 상당의 버섯 선물 세트 1개씩 받았다.

교육부는 2018년 1월 '전남대 스승의 날 및 추석 명절 금품수수 의혹' 관련 감사를 했고, 같은 해 3월 대학 측에 A씨 등을 징계처분하고 위반 사실을 과태료 관할 법원에 통보할 것을 요구했다.

대학 징계위원회는 법원의 과태료 재판 이후에 징계를 심의하기로 하고, 광주지법 법원에 해당 교수들의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사실을 통보했다. 광주지법은 지난해 4월 A씨 등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겠다고 결정했고, 대학 징계위는 지난해 5월 A씨 등에 대한 징계 의결 요구를 반려했다.

그럼에도 대학 측은 반려 의결이 형식에 부합하지 않고 반려 사유도 적절하지 않다고 다시 징계를 의결해달라고 요구했다. 결국 대학 징계위는 지난해 6월 A씨 등이 부정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며 견책 처분을 의결했고, 대학 측은 이 의결에 따라 지난해 7월 이들 교수를 견책 처분했다.

그러나 교수들은 명절 선물이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에 해당하고 직무 관련성이 없어 부정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으며, 법원에서 같은 판단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해당 학교 학생회는 예전부터 교수들에 대한 추석 선물비용 예산을 책정해 학생회비로 선물을 하는 관행이 있었다"고 밝혔다. 또한 "개강 총회에서 선물 예산에 대해 학생들의 승인을 얻었고 선물 액수로 볼 때 학생회 학생들이 교수들로부터 혜택을 기대했다거나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보기 힘들다"고 덧붙였다.

/김지우 기자 dok2000@kwangju.co.kr

## 성추행 판결로 해고 결정된 근로자 전남지노위 복직 명령에 노조 반발

전남지방노동위원회(이하 전남지노위)가 성추행 판결로 해고결정 된 근로자에 대해 '복직명령'을 내리 노조가 반발하고 나섰다.

26일 민주노총 공공연대노동조합 광주지부에 따르면 최근 전남지노위는 법원의 성추행 판결을 받고 해고된 광주시 교통약자이동센터의 근로자 A씨(53)에 대해 복직명령을 내렸다.

A씨는 지난 2018년 2월 7일 컴퓨터 앞에서 상담업무 보고 있던 피해 여성의 옆구리를 만진 혐의(강제추행)로 지난해 12월 11일 광주지방법원 1심에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의 징역형을 받았다. 추가로 A씨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과 함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복지시설에 각 2년간 취업제한도 선고 받았다.

이후 지난해 12월 25일 광주시 교통약자이동센터 인사위원회에서 A씨는 해고가 결정됐지만, A씨가 전남지노위에 구제신청을 했고 전남지노위는 이를 인용했다.

전남지노위는 광주시 교통약자이동센터가 A씨를 확정되지 않은 1심의 유죄판결에 대해 인사규정을 근거로 해고했다며, 이는 정당한 해고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대해 광주시 교통약자이동센터 노조는 "전남지노위의 판단은 법원의 징역형과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한 판결을 부정하는 것으로 사법부위에 균근하는 것"이라고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노조측은 "사안의 중대성과 심각한, 피해자의 인권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의 관점이 아닌 철저히 가해자 관점으로 판정된 것"이라며 "가해자와 피해자를 다시 같은 근무지에서 일하게 한 전남지노위의 성인지의식에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또 "법원은 가해자에게 아동복지시설과 장애인복지시설에 2년간 취업제한을 명했지만 전남지노위에서 복직명령이 내려진 광주시교통약자이동센터는 이용자 대다수가 장애인들이다"면서 "전남지노위가 법원의 취업제한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고 강조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26일 새벽 3시45분께 구례군과 남원시 경계인 도계철터 앞에서 구례주민들이 도로에 누워 서울~지리산 성삼재 구간의 시외버스 노선 허가 취소를 요구하며 이틀째 버스 운행을 막았다. <구례군민추진위 제공>

## 구례 주민들, 서울~성삼재 버스 운행 저지 이틀 연속 시위

### "환경보호·주민의견 외면"

### 노선 허가 취소 촉구

구례지역 주민들이 서울과 지리산 성삼재 구간을 시외버스 노선 허가(광주일보 2020년 7월14일자 7면 보도)에 반대하며 이틀연속 버스운행 저지에 나섰다.

26일 지리산 성삼재 시외버스 운행반대 구례군민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에 따르면 추진위는 이날 새벽 3시45분께 구례군과 남원시 경계 부근인 도계철터에서 (주)함양지리산고속의 동서울에서 지리산 성삼재로 오는 시외버스 운행 저지에 나섰다. 일부 참가자들이 버스 앞에 누워 10여 분간 차량 운행을 저지했으나, 경찰

의 제지로 버스는 통과했다.

이 자리에는 추진위원회 소속 회원들 비롯해 주민과 구례군의회 의원 등 50여 명이 함께 했다. 추진위와 주민들은 전남 새벽 3시45분께에도 동서울-지리산 성삼재 구간을 시외버스 운행을 막아냈다.

이날 첫 버스에는 버스운송업체인 (주)함양지리산고속 대표와 이용객 등 6명이 타고 있었다.

김영의 추진위원장은 잠시 버스에 올라 승객들에게 불편을 끼친 점을 사과했다. 이어 군민들이 버스 운행 저지에 이르게 된 이유를 설명하고 버스회사 대표에게 노선 철회를 요구했다.

그러나 버스회사 측은 "국토부의 결정 사항으로 철회 의사가 없다"고 답변한 것

으로 전해졌다.

주민들은 비가 내리는 날씨 속에서도 '안전, 환경보호, 주민의견 외면한 지리산 시외버스 운행 결사반대', '국토교통부는 노선 인가를 철회하라'는 피켓을 들고 반대 구호를 외쳤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날 10일 함양지리산 고속에 서울~함양~인월~성삼재 구간 고속버스 운행노선 승인을 통보했다. 해당 노선은 매주 금·토요일 왕복 1회 운영되며 이용객 상황에 따라 증편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구례군과 구례군의회, 전남도는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행정 및 법적 조치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구례=이진택 기자 lit@kwangju.co.kr

## 미성년자 성매매 강요하고 대금 가로챈 3명 입건

광주광산경찰은 26일 미성년자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돈을 빼앗은 A(23)씨 등 20대 3명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10대 여성 B씨를 협박해 5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하고 돈을 가로챈 혐의다.

경찰조사결과 이들은 올 1월 채팅 어플

을 통해 알게된 B씨에게 '성매매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 성매매를 하도록 해 성매수인들에게 받은 돈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가로챈 돈 대부분을 유흥비와 숙박비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 등을 구속하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중이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 법원 경매부동산의 매각 공고

1. 매각물건의 표시 및 매각조건 <경매 3개> \*QR코드: 법원경매정보 웹으로 접속됩니다.

사건번호	물건 번호	소재지 및 면적 [㎡]	용도	감정평가액 최저매각가액 [단위: 원]	비고
2019타경 4038	1	해남군 송지면 서정리 1286-3 2464㎡	답	19,712,000	농지취득자격증명요
	2	동소 산96-2 1442㎡	답	12,257,000	농지취득자격증명요
2019타경 4045	1	완도군 금당면 가학리 337-1 1187㎡ [농지취득자격증명요]	전	28,994,000	일괄매각, 목축10채 제외되는 체시외 건물및수목있음
		동소 산96-5 152㎡	도로	4,693,500	일괄매각, 지분매각, 공유자우선매수권행사는 1회로 제한
		동소 산96-9 1219㎡	임야	4,693,500	
		동소 산96-1 1172㎡	도로		
		동소 산96-2 634㎡	임야		
	2	동소 산96-3 200㎡ [물건번호2: 공유자정정화, 정선미, 정현천, 정수현, 정광권, 정혜진각 6/12지분전부]	임야		
2019타경 5228	1	완도군 군외면 황진리 364 145㎡	대	8,227,000	일괄매각
		동소 산366 288㎡	대	8,227,000	
	2	완도군 완도읍 군내리 679-76 79㎡ [공유자인대석11/14지분전부, 매각제외되는 체시외 건물있음, 현황대지]	임야	1,800,030	지분매각, 공유자우선매수권행사는 1회로 제한
2019타경 52532	1	해남군 산이면 예정리 525 869㎡ [연고자미정]	전	16,511,000	농지취득자격증명요
2019타경 52556	1	완도군 보길면 정자리 산149-16 59702㎡ [공유자박승우1/2지분전부, 연고이상분묘소재]	임야	35,821,200	지분매각, 공유자우선매수권행사는 1회로 제한

[기타]  
2019타경 51829 1 해남군 산이면 대진리 244-5 112㎡ [매각제외되는 체시외 공유자우선매수권행사는 1회로 제한]

● 공고된 부동산의 면적 표시는 실측과 다소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특별매각조건  
① 농지법상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해야 하는 최고가매수신청인이 매각결정일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하지 아니함으로써 매각이 불가능하며 이는 매수신청보통공고를 발송하지 않고 이를 해당시 매각대금에 산입한다. 불법행위 변경으로 인한 원상복구가 필요한 경우 매수인이 이를 부담할 수 있음.  
② 공유자가 민사집행명 제140조에 의한 우선매수신청을 한 경우 그 매수신청 후 최초로 진행된 매각기일에 매수보통공고의 인자로 실측되는 경우 그 공유자는 그 이후 해당 부동산의 매각기일에서는 우선 매수권을 행사할 수 없다. 따라서 당해 기일에 다른 매수신청인이 없는 경우 최저매각가액을 공유자우선 매수신청인으로 본다.  
2. 매각기일 : 2020. 8. 10. [월] 10:00  
3. 매각장소 : 2020. 8. 18. [화] 14:00  
4. 매각장소 :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입찰방명  
5. 매각방법  
① 입찰방명에 비추어 기일입찰표에 사전번호, 입찰자의 성명, 주소, 입찰가격, 보증금액 등을 기재하고 날인하여 보증금을 함께 입찰봉투에 넣어 입찰함에 투입하면 된다. 매수신청자는 최저매각가격의 1% [미리돈]에 해당하는 보증금과 발행의 자기앞수표 또는 현금 중 하나거나 지급보증서(국공채)를 제출한 문서[입찰 보증서]를 준비하여야 한다.  
②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입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동입찰신청서에 각자의 지분을 명기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③ 입찰봉투의 투입이 완료되면 관변로 개찰을 실시하여 최고, 최저의 가격을 입찰한 사람을 최고가매수신청인으로 정하고, 최고의 가격으로 입찰한 사람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입찰자들만을 상대로 추가입찰을 실시한다.  
④ 최고가매수신청인과 차순위매수신청인을 제외한 다른 매수신청인들은 입찰보증금을 입찰보증금에 충당되는 즉시 반환받는다.  
6. 매각허가 및 대금납부  
① 최고의 가격으로 입찰한 사람에 대하여 매각결정일에 매각허가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면 대금지급일까지 매각대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대금지급일까지 매각대금 결정을 하지 않으면 매각허가 결정이 취소된다.  
②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입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동입찰신청서에 각자의 지분을 명기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입찰, 채무회상 등 집행 날의 3일전까지 증원 매수인이 매각대금 및 지분지, 비용을 납부하면 대금납부조건 유효하며, 미시지 채무자는 상환하지 아니한다.  
7. 소유권이전 및 인도  
① 매각대금을 납부함으로써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되며, 각종 지당권, 기입행위는 승수에 관계없이 법적 효력을 소멸한다. 소유권이전등기 및 지당권이나 기입행위를 위해서는 등기부와 등기부등본을 납부한 후 등기청구신청서 및 등기청구수용증과 지상권 청취서, 국민주택채권발행번호를 기재한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이 위 등기를 촉탁하여 준다.  
② 매각대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불구이고, 채무자, 소유자 또는 대항책없는 부동산 소유자가 매수인에게 매수인도를 인도하여 주지 아니하면 법원에 인도행위를 신청할 수 있다.  
8. 주의사항  
① 매각된 주택 또는 상가건물에 최선순위와 지당권 등이 설정된 날로부터 매수인 주된 목적은 담보로 하고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이나, 사업 목적을 형성한 임차인이 있을 때에는 그 임차보증금을 매수인이 인수하여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② 일반인들 몰래에 제공하기 위하여 매각기일 1주일 전부터 매각결정일 현재, 현황조사보고서 및 평가서의 사본 등을 우편방명 인사장(신청)과에 비치하여 열람에 제공하고 있으므로 미리 필요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음. 열람을 원하시면 법원에 방문하여 사본을 열람할 수 있다.  
③ 입찰보증금에 나오는 내용은 매각결정일에서 열람할 수 있음. 열람을 원하시면 법원에 방문하여 열람할 수 있다.  
④ 입찰보증금에 나오는 내용은 입찰자의 기재 및 입찰보증금의 반환에 필요한 사항과 동등하고 오기시 바리, 타인의 대리인으로 입찰하고 있는 사람은 입찰명칭을 첨부한 위임장을 반드시 입찰하고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⑤ 소유권이전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이 요구되는 농지의 경우에는 최고가매수신청인으로 결정된 후 매각결정일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하여야 매각이 허가된다. 단, 도지이용계획확인서 등에 의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하지 않음이 소명된 경우에는 매각이 허가될 수 있다.  
⑥ 공고된 물건에 매각할 전에 경매신청이 취하되거나 집행이 취소·정지된 경우, 또는 매각기일에 변경된 경우에는 별도의 공고 없이 입찰에서 제외된다.  
⑦ 신문에 공고되는 물건은 최초의 매각기일에 해당되는 물건이며, 속행사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신문공고를 하지 않으므로 우편방명 게시문의 공고나 방명외 비추어 매각결정일에서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⑧ 대금납부 불부하가 현재 채무자 채무를 변제하면 매각이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이때에는 매수신청인이 제출한 매수신청보증금을 반환합니다.  
매각일 공고의 요지는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주소 : http://www.courtaction.go.kr [방명공고] → 법원경매정보센터 \*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공고내용의 열람 가능한 정보는 방명상 제공하도록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것을 국민명령을 행하여 따로 제공한 것으로서, 혹시 그 중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다면 이를 이유로 매각불허가 신청이나 항고, 대법원신청행위나 손해배상 청구 등을 할 수 있으므로, 관심있는 물건에 관하여는 반드시 방명에 나오는 시 게시문의 매각일외 공고나 비추어 매각결정일에서 등을 꼭 확인하신 후 입찰하시기 바랍니다.  
2020. 7. 27.

##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사법보좌관 조길호